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18(월)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6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818,763,965천원(일반 785,953,596천원 특별 32,810,3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818,763,965	734,968,659	710,356,657	21,882,868	2,729,134	83,795,306
일반회계		785,953,596	711,465,630	687,067,128	21,669,368	2,729,134	74,487,966
특별회계		32,810,369	23,503,029	23,289,529	213,500	0	9,307,340
	의료급여기금	682,598	590,000	590,000		-	92,59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	
	주차장	31,536,371	22,321,629	22,108,129	213,500	-	9,214,742

4. 푸른미래도시국 추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푸 른 미 래 도 시 국		34,766,416	26,111,712	8,654,704	33.14 %
주	택 과	606,065	609,028	△2,963	△0.49 %
도	시 계 획 과	1,994,790	1,967,803	26,987	1.37 %
주	거 정 비 과	1,520,557	1,534,087	△13,530	△0.88 %
공	원 녹 지 과	30,149,292	21,497,027	8,652,265	40.25 %
건	축 과	495,712	503,767	△8,055	△1.60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주거정비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추진	- 독산동 우시장 주변 동절기 스팀청소 - 물청소가 불가능한 동절기에 악취 등 방지하기 위한 청소 용역비	15,000	-	15,000
공원녹지과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 재조성사업	- 유아숲체험원 진입부, 야외테이블 등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놀이공간 재조성	412,600	62,600	350,000
금천 폭포공원 명소화 사업	- 폭포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 및 금천 랜드마크 공원 조성	5,600,000	4,850,000	750,000
동네공원 재조성	- 노후어린이공원 시설물 재조성 (12개소)	1,960,000	1,700,000	260,000
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 독산1동 -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코트 확대 등 시설개선	337,300	150,000	187,300
관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 감로천(독산4동), 만수천(독산3동), 상록배드민턴장(독산3동) -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코트 확대 등 시설개선	962,700	600,000	362,700

세 부 사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가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생태문화 탐방길 조성사업	- 폭포공원과 호암산성 간 무장애 보행길 조성	1,665,000	515,000	1,150,000
금천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및 운영관리	- 도심 속 농업체험이 가능한 텃밭 운영	339,952	319,952	20,000
시흥계곡 ~호암산성 간 방재·탐방 사업 용지 취득	- 시흥계곡~호암산성 간 생태문화 탐방길 조성과 산사태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시설 부지 확보	1,800,000	-	1,800,000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안심공원	- 산기슭공원과 금천체육공원 연결 주민들에게 휴식과 안정의 기회 제공하는 무장애숲길 공원 조성	120,000	-	120,000
말뫼마을 마당 정비사업	- 시설노후(2001년 조성) 및 이용률이 저조한 말뫼마을마당 정비(독산동)	100,000	-	100,000
도시농업 체험센터 운영	- 녹지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을 도시농업체험센터로 구축 운영	425,000	-	425,000
호암산 자락 도시농업 공원 조성(구비)	- 다섯가지 테마정원 조성	1,500,000	-	1,500,000
호암 치유의 숲길(무 장애데크) 조성	- 서울둘레길 및 호암늘솔길과 연계 한 무장애데크길 조성	850,000	-	850,000
만수천 공원 보수정비 사업	- 독산자연공원 내 만수천공원일대 노후시설 개선	50,000	-	50,000
안전한 가로수 정비	- 위험 시설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보행편의제공	600,900	100,900	500,000
위험한 등산로 진입공간 안전성 확보 실시설계 용역	- 도로변 위험성이 있는 등산로 진입 공간 확충 등 보행환경 개선 - 독산자연공원 등 6개소	100,000	-	100,000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신축	- 노후된 관리초소 재정비	799,000	450,000	349,000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 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미활용 빈집을 활용 생활정원 조성 - 서울시 매칭비 (시9:구1) 미반영 통 보('23.7.17.)	23,000 구 23,000	230,000 시 207,000 구 23,000	△ 207,000 시 207,00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보건소 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0	142,328 국 70,464 시 21,139 구 50,725	△ 142,328 국 70,464 시 21,139 구 50,725

6. 검토 의견

○ 푸른미래도시국은 기정예산(261억 1,171만원)에서
금회 86억 5,470만원이 증액된 347억 6,641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25%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주택과

기정예산(6억 902만원)에서 금회 296만원 감액 편성

나. 주거정비과

기정예산(15억 3,408만원)에서 금회 1,353만원 감액 편성

다. 공원녹지과

기정예산(214억 9,702만원)에서 금회 86억 5,226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내용으로

금천 폭포공원 명소화 사업 7억 5,000만원 증액

생태문화 탐방길 조성 11억 5,000만원 증액

시흥계곡 호암산성 간 사업 용지 취득 18억원 증액 편성

도시농업 체험센터 운영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은 그 시급성과 즉시성이 요구됨으로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봄.

○ 푸른미래도시국의 금회 추경안은 계속 사업의 보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원의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